

 국토교통부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1. 8. 31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공공택지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양희관, 사무관 강한우, 주무관 조남희 • ☎ (044) 201-4515, 4521
	토지정책과		• 과장 정우진, 사무관 장현진, 주무관 손갑재 • ☎ (044) 201-3401, 3409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불법 투기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< 관련 보도내용 (아시아경제, '21.8.31) >

◆ 요목 빼곡·새 비닐하우스 곳곳에...“3차 택지도 투기 정황”

□ 투기근절대책(3.29) 후속조치*에 따라 신규 공공택지에서 보상비를 노리고 과도하게 식재된 수목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.

* 토지보상법 하위법령(보상가액 엄격산정), 공공주택법 하위법령(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강화) 개정절차(법제처 심사)가 진행 중이며, 개정 내용은 신규 공공택지에 모두 적용

○ 수목·농업손실보상 등에 대한 엄격한 보상을 위해 비정상적 식재, 불법 형질변경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보상평가에 반영합니다.

*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·물건 조서 작성 전 기본조사서(보상 물건에 대한 세부 조사자료)를 작성하여 식재 밀도, 경작 여부 등 확인

□ 협의양도인 택지*의 경우에는 단기 취득을 통한 투기 배제를 위해 공급대상이 주민공람공고 1년 이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제한되며, 장기 토지보유자(5년 이상) 우선공급 등의 공급기준도 강화됩니다.

* 기준면적 이상 토지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보상 협의에 의해 양도한 자에게 추첨으로 택지(단독주택용지) 공급 또는 주택 특별공급 가능

○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.

○ 아울러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,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『공공주택 특별법』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공급이 제한됩니다.

※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에 따라 협의양도인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도 협의양도인 택지의 공급자격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

□ 어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발표 즉시 건축물의 건축, 토지 형질 변경, 식재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,

○ ‘투파라치’(주민 신고·포상제), 사업지구 대상 항공사진·영상촬영·CCTV 설치, 주·야간 상시 순찰 등을 통하여 수시로 투기행위를 단속할 방침입니다.

□ 또한, 3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전 실거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사례 22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, 국세청,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며,

○ 경찰청에서는 현재 수사 중인 농지법 위반의심 사례, 실거래 조사 결과를 포함하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

□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신규 공공택지와 관련된 불법 투기 행위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공공택지기획과 강한우 사무관(☎ 044-201-4515), 토지정책과 장현진 사무관(☎ 044-201-3401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